투자위험등급 : 2등급 [매우높은 위험]	**GS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A4186)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전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GS자산운용 (주) (02-6910-11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gsasset.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2년 8월 8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10월 18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6910-1100/ wwwgsasset.co.kr),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추이

Ⅱ. 매입 ·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투자신탁의 전환
5.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Ⅲ.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 자 목 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55%+KOBI120*45%

주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이며, 수익자는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table>
<tr><th colspan="2">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 rowspan="2">①</td><td rowspan="2">수익증권
(모수익증권)</td><td>60%
이하</td><td>GS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td></tr>
<tr><td>50%
미만</td><td>GS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td></tr>
<tr><td colspan="4">다만, GS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및 GS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td></tr>
<tr><td>②</td><td colspan="3">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td></tr>
<tr><td>③</td><td>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td><td>10%
이하</td><td>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td></tr>
</table>

※ 위의 투자대상은 이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이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등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 **모자형 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 및 국내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 KOSPI*55%+KOBI120*45%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GS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1. **'Leading Company(우량기업)'에 투자** - Leading Company란 탁월한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 국내의 대표기업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성과를 초과할수 있는 우량기업에 투자 2. **'Key Driver(핵심요인)'의 꾸준한 분석** -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 가장 이슈가 되는 핵심요인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 특정시점의 핵심요인을 찾고 핵심지표의 방향성을 분석하여 저평가된 종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 3. **'수익성장잠재력' 보유종목의 발굴** - 기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혹은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여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을 발굴 및 투자하여 초과수익 추구 * 비교지수 : KOSPI*95%+Call금리*5%	60% 이하	각 모투자신탁의 투자합은 50% 초과
GS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1.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 - 국공채, 은행채, A등급 이상 회사채 등 우량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적 이자수익 추구 - 강도 높은 리서치를 통한 종목선택 및 투자종목이 적정가치 실현의 경우 교체매매 실행 2. **'초과수익전략' 구사** - 신용분석 및 상대가치분석, 금리수준, 수익률곡선 형태 등을 활용한 초과수익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추가적인 수익 추구 3. **'위험' 관리** - 엄격한 시장 및 신용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자위험 최소화 추구 - 회사채의 경우 대기업 및 그룹 등의 발행 채권 중심투자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주력 * 비교지수 : KOBI120*100%	50% 미만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방안

모투자신탁 명칭	위험관리 방안

GS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1. 시장위험 - 빈번한 자산 배분 지양 - 파생상품 활용으로 불필요한 거래 비용 축소 2. 변동성위험 -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성에 노출될 경우 포트폴리오 집중 점검 - 변동성 원인 분석 후 대응 방안 실행 3. 개별기업위험 - 철저한 기업분석과 투자종목의 주기적 기업 탐방 4. 유동성 위험 - 투자종목 선정시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고려 5. 신용위험 - 투자종목 선정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낮은 종목 투자 배제
GS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1. 시장위험 - 듀레이션 조정을 통하여 금리변동위험 최소화 2. 신용위험 -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신용위험 대응 3. 유동성 위험 - 우량채권 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및 안전성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구성하여 운용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1)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투자방법 등	1) 투자자는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상기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투자신탁의 투자기간 등	1) 이 투자신탁의 투자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이전받기 전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투자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적립기간 : 10년 이상 - 거치기간 :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직전일까지 -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2) 수익자는 적립기간 중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 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증명서 발급 등	1) 판매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 를 발급합니다. 2) 수익자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의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의 투자신탁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 위의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에 따라 신탁계약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판매회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1)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연금의 지급개시	1) 판매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급지급을 개시합니다. 2)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제4영업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후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금의 지급방법	1) 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 제3영업일 전일에 해당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지급회수로 균등분할하고 당회 지급분 좌수를 수익자가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연급지급액 = (연금지급일 제3영업일 전일의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 ÷ 잔여연급지급회수) X 연급지급일 제1영업일 전일에 공고되는 1,000좌당 기준가격 ÷ 1,000 2)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매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상호간에 연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장기로 변경 신청한 때 : 변경 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변경 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계산된 해당 기간분 금액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단기로 변경 신청한 때 : 변경 후 약정연급주기에 의하여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일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 합니다. 5) 판매회사는 연금약정지급일에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투자신탁계약의 중도해지	1) 수익자가 적립기간 만료전에 투자재산을 인출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지급 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합니다. 2)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후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해 계좌를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처리된 경우 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을 말하며, 수익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정한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연금지급주기를 역산하여 산출한 날짜로 하되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가 되는 날 중 나중일 이후여야 합니다.
* **"약정연금지급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기준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연월의 상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하며, 상당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일"**이라 함은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상기 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은 정부정책 및 관련법령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모투자신탁에관한 위험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서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채권)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채권) 및 주식(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채권)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위험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경우를 1등급으로 하여 가장낮은위험도를 나타내는 5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높은 위험수준인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유가증권 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전체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의 적정 비율을 선택함이 바람직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GS 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임현근	1971	책임 운용역 (주식운용 1팀장)	19개	2,860억	- 전남대학교 회계학 학사 - 우리투자증권 WRAP 운용[주식운용] (10 년 3 개월) - 현 GS 자산운용 주식운용 1 팀장 (2008.07 ~ 현재)
장두익	1973	책임 운용역 (채권운용 팀장)	13개	23,695억	-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삼성자산운용 상품전략팀(8 개월) - 삼성자산운용 MMF 운용팀(3 년 6 개월) - 삼성자산운용 채권전략팀(1 년 5 개월) - 삼성자산운용 투자 Poll 운영팀(2 년 6 개월) - 현 GS 자산운용 채권운용팀장(2010.9~현재)

노효종	1974	부책임 운용역 (주식)	19개	2,860억	-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 동부증권 리서치 (6 년 9 개월) - 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1 년 10 개월) - 유리치투자자문 주식운용(4 개월) - BS 투자증권 리서치(11 개월) - 현 GS 자산운용 주식운용 (2010.09 ~ 현재)
정승호	1975	부책임 운용역 (채권)	13개	23,695억	-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 뉴욕주립대학교 회계학 석사 - 딜로이트 & 투쉬 뉴욕사무실 회계사 (3 년 1 개월)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M&A 팀(2 년 11 개월) - 현 GS 자산운용 주식운용 (2010.07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주식운용1팀) : 2개, 319억]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채권운용팀) :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 및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당해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 수익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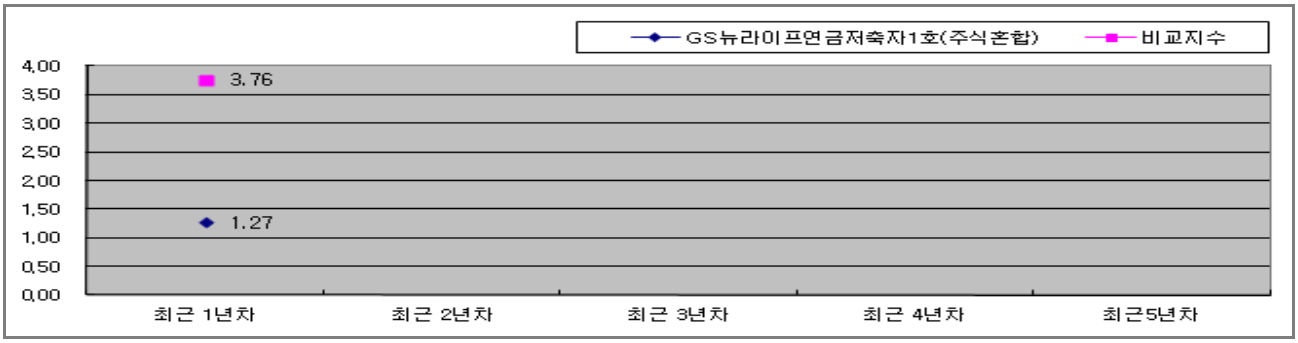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1.08.09 ~12.08.08	-	-	-	-
뉴라이프연금저축자1호(주식혼합)	1.27%	해당사항 없음			
비교지수	3.76%				

주1) 비교지수 : KOSPI*95%+CALL금리*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Ⅱ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부과기준
가입자격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주1)	납입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이전수수료	-	이전시
해지가산세주 2)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2.2%(주민세포함)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차등적용의 관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gsasset.co.kr)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1. 천재 · 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만,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45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35	
신탁업자 보수	0.023	
일반사무관리보수	0.017	
기타 비용	0.00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84	-
합성총보수,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0.84	-

비용 포함)		
증권 거래비용	0.1678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한 총 보수 · 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이 투자신탁은 최초로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당사에서 운용중인 타 투자신탁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시 실제 발생하는 기타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 예시	169	349	545	1,108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 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취판매수수료 : 1.0% 가정)

2. 과 세

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로 과세 됩니다.

나. 이 투자신탁은 타 집합투자기구와 다른 연금저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 연금저축 투자신탁의 과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 과세(주민세포함 5.5%)

►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 과세(주민세 포함 22%)

► 해지가산세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2.2%(주민세 포함) 해지가산세 부과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당해 연도의 저축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 본문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 · 게시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포함한다)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gs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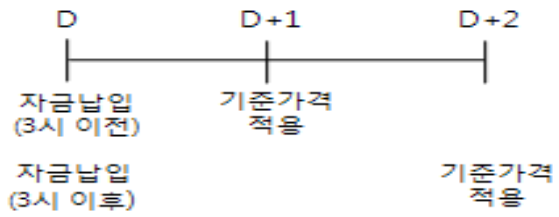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 영업일(D+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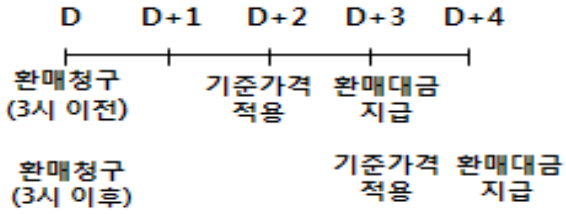

4. 투자신탁의 전환

(1)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으로 전환

- **오후 3시 이전에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일)에 공고되는 전환청구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일)에 공고되는 전환대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오후 3시 이후에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일)에 공고되는 전환청구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일)에 공고되는 전환대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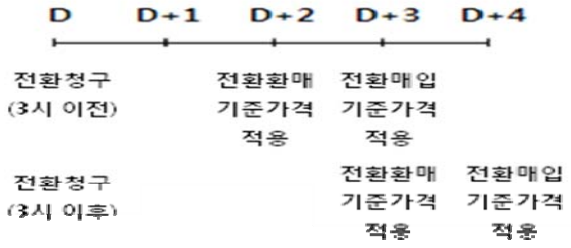

※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전환대상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GS 뉴라이프연금 저축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을 "GS 연금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수익증권에 투자	1. **'Leading Company(우량기업)'에 투자** 2. **'Key Driver(핵심요인)'의 꾸준한 분석** 3. **'수익성장잠재력' 보유종목의 발굴** * 비교지수 : KOSPI*95%+Call금리*5%

5.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기간 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 청구의 접수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때에는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에 따라 일괄 이전처리 합니다.
-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5영업일)에 이전합니다.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이전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Ⅲ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2012.07.28)
운용자산	16,663,828
증권	15,787,647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876,181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22,303
자산총계	16,686,131
운용부채	0
기타부채	33,854
부채총계	33,854
원본	17,050,799
수익조정금	-190,953
이익잉여금	-207,569
자본총계	16,652,27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2011.07.29 - 2012.07.28)
운용수익	-106,319
이자수익	16,604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122,923
기타수익	0
운용비용	99,364
관련회사 보수	99,364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1,886
당기순이익	-207,569
매매회전율	0.00